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0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 박지혜・위성곤・이개호

조인철 · 강준현 · 정일영

정진욱 · 오세희 · 박수현

허 영·김용만·이재관

이용우 · 문대림 · 황명선

이재강 • 이광희 • 박선원

박희승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의료급여에 관한 특례)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의료급여에 관한 특례)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
	하여 의료급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
	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u>로 정한다.</u>